

동물·식물·광물의 포획·채취·반출 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(전화번호:)		
대 상 자 연 유 산	명 칭				
	종 류				
	도래지 등				
포획·채취·반출 사유					
포획·채취·반출 부분			수 량		
포 획·채취·반출예정 연 월 일					
포획·채취·반출 방법			반출지		
기 술 담 당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재 반 입 여 부					
그 밖 의 사 항			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·식물·광물의 포획·채취·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행위 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	--------

처리 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